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 1997. 10. 22.

개정 2000. 03. 03.

2018. 05. 0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회 및 학생단체지도 규정 제7조 ①항 및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회 규정 제6조에 의거 농업생명과학대학 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장, 교무부학장, 학생부학장, 학부(과)장 및 학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학장, 부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부학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, 학생행정실 주무자가 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문화의 성격과 방향에 관한 사항
2. 학생의 과외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
3. 동아리 및 간행물 발간 지도에 관한 사항
4. 학생회 및 학생단체 활동에 관련된 사항
5.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학생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부칙(제10호, 1997.10.22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문화육성위원회
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(제19호, 2000.3.3.)

이 규정은 200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25호, 2018.5.8.)

이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